

행복기숙사 입주생 선발 기준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안내

1 입주생 선발기준

□ 1단계: 우선선발(사회적 배려 대상자)

순위	대상자	제출서류	
1순위	장애인, 임산부(본인)	·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(장애인증명서) · 임신증명확인(임신진단서)	
2순위	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	·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
3순위	차상위계층 가구 자녀	· 차상위계층확인서	
4순위	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 입·퇴소 대학생	· 청소년 복지시설 입·퇴소 확인서 · 소득증빙서류	
	보호종료아동	· 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보호종료 확인서 · 소득증빙서류	
	한부모가정 자녀	· 한부모가족증명서	
	다문화가정자녀	·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· 소득증빙서류	
	다자녀 가구 자녀	· 가족관계증명서 · 소득증빙서류	
	국가유공자 자녀	· 국가유공자 관련 증빙 서류 · 가족관계증명서 · 소득증빙서류	
5순위	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% 이하 가구 자녀 또는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(기준 중위소득 50%) 이하 가구 자녀	소득증빙서류	· (직장근로자)원천징수영수증 · (무소득자)사실증명(신고사실없음) · (사업자 등)소득금액증명원
6순위	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 자녀 또는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(기준 중위소득 70%) 이하 가구 자녀		
7순위	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자녀 또는,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4구간(기준 중위소득 90%) 이하 가구 자녀		개별 소득분위 확인서
8순위	4순위 해당자 중 소득증빙 미제출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4구간 이상 자녀	관련 서류	

※ 4순위 해당자는 7순위에 해당하는 소득증빙 제출 필요(한부모가정 자녀 제외)

※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우선선발이므로 증빙서류를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업로드 (PDF형식만 가능)

- 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1개의 파일로 통합하여 업로드 (휴대폰으로 촬영한 서류 불가, 스캔본만 인정)

- 모든 서류 발급일자는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

- 제출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나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또는 미표기

- 파일명: ex) 2400000(본인 학번)_홍길동_사회적 배려 대상자 서류

- 파일에 비밀번호 설정과 미리보기 및 열람용으로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.

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기준 안내

구 분	소득 기준																
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0% ~ 70%	□ 소득기준 금액 -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30% ~ 70% 이하일 것 - 세대구성원이란 주민등록등본상 조부모, 부모, 형제자매, 본인을 뜻함 - 세대구성원 모두 각각의 소득서류 제출 필요 -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모두 합산한 금액 □ 제출서류 -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(직장근로자) - 2025년 소득금액증명서(사업자) - 2025년 사실증명서(소득이 없는 경우) - 계산방법 ① 부모님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구성원이 소득 관련 서류 발급 ②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 ÷ 12 ③ 가족 구성 인원수에 따른 기준표 확인(아래) (2024년 기준, 단위 : 원) <table><tr><th>소득 구분</th><th>2인 가구</th><th>3인 가구</th><th>4인 가구</th></tr><tr><td>소득 30% 이하</td><td>1,807,411</td><td>2,288,092</td><td>2,573,426</td></tr><tr><td>소득 50% 이하</td><td>2,752,957</td><td>3,359,099</td><td>3,811,028</td></tr><tr><td>소득 70% 이하</td><td>3,854,140</td><td>4,702,739</td><td>5,335,439</td></tr></table> ※1인 또는 5인 가구 이상은 별도 확인 필요	소득 구분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소득 30% 이하	1,807,411	2,288,092	2,573,426	소득 50% 이하	2,752,957	3,359,099	3,811,028	소득 70% 이하	3,854,140	4,702,739	5,335,439
	소득 구분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												
	소득 30% 이하	1,807,411	2,288,092	2,573,426													
	소득 50% 이하	2,752,957	3,359,099	3,811,028													
	소득 70% 이하	3,854,140	4,702,739	5,335,439													

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다자녀가구, 국가유공자 기준

한부모가정	주민센터 및 정부24 사이트에서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
다문화가정	부 또는 모의 국적 확인 서류(귀화자는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)와 가족관계증명서 서류로 확인 가능한 자
다자녀가구	「민법」상 자녀 기준을 준용하여,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
국가유공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

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금(장학금) 안내

내용	주요내용	비고
장학금 신청 대상	· 사회적 배려 대상자	
장학금 지급 인원	· 기숙사 정원 약 5% 내외	
장학금 혜택 내용	· 기숙사비 50% 감면 (납부한 기숙사비의 50% 환급)	
장학금 신청 기간	· 2026년 11~12월 예정	

□ 2단계: 일반 선발기준

· 재(복)학생 선발점수 산출기준 (거리점수+성적점수±상·별점)

재학생(복학생) 선발점수 산출기준	
▶ 내륙지역의 경우	
거리점수 =	$\frac{\text{신청자 본가 주소지에서 대학까지의 거리}}{\text{신청자중 '본가 주소지에서 대학까지 최고 원거리'}} \times 50\text{점}$
성적점수 =	$\frac{\text{신청자 직전학기 대학 성적평점}}{4.5(\text{만점기준})} \times 50\text{점}$
상점점수 =	직전 학기 기숙사 상점의 합
별점점수 =	직전 학기 기숙사 별점의 합
선발점수 =	거리점수 + 성적점수 + 상점점수 - 별점점수
▶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거리점수 미포함하여 성적점수를 100점으로 산출	
성적점수 =	$\frac{\text{신청자 직전학기 대학 성적평점}}{4.5(\text{만점기준})} \times 100\text{점}$
상점점수 =	직전 학기 기숙사 상점의 합
별점점수 =	직전 학기 기숙사 별점의 합
선발점수 =	성적점수 + 상점점수 - 별점점수
※ 본가 주소지에서 대학까지의 거리 : 포털사이트 길 찾기 최단거리(실시간 정보 미포함) ※ 복학생의 경우, 상점 · 별점점수 미포함 ※ 대학 생활관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, 거리 산출을 생활관 이전 주소지 기준으로 산정 함	
입주 제한	· 전염성 질환자 · 휴학생 · 기숙사 강제 퇴사자 (별점 과다자 포함) · 거주지의 정보가 허위인 자(영구 입주 제한) · 직전학기 학사 경고자 · 기숙사 관장이 불허한 자 및 기타 단체 생활 부적격자
선발대상 제외사항	· 별점 10점 초과자 우선 선발대상 제외될 수 있음. · 직전학기 강제퇴사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됨. · 기숙사 단체생활 부적격자 우선 선발대상 제외
※ 문의처 ○ 주 소: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528길 15(만촌동) 수산나관 행복기숙사 1층 행정실 ○ 연락처: 행복기숙사(053-749-7456) ○ F A X: 053-749-7459	